

01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도시관리계획결정의 법적 성질을 행정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② 계획재량과 일반행정재량 사이에는 어떠한 양적·질적 차이도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 ③ 판례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 ④ 도시관리계획의 원칙적인 결정권자는 관할구역을 담당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이다.
- ⑤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02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행정지의 요건의 하나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사회통념상 금전으로는 그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손해를 말한다.
- ②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효력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요하지 아니한다.
- ③ 집행정지결정은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자와 관계행정청 그리고 제3자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 ④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에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집행정지 중 처분 자체에 대한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0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험발생의 방지조치는 경찰관의 재량행위에 해당하지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 ② 경찰책임 중 행위책임의 경우 행위자인 피감독자나 감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원칙상 그 요건이 되지 않는다.

- ③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도지사 소속으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 협조 및 자치경찰의 운영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치안행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 ④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은 예방적 조치이므로 이미 행하여진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⑤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두는 경위는 회의장건물 안에서, 국가경찰공무원은 회의장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04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환 전의 행위와 전환 후의 행위는 목적·효과에 있어서 실질적 공통성이 있어야 한다.
- ② 판례에 의하면 하자의 치유는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가능하다.
- ③ 전환이 관계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
- ④ 하자가 치유된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적법한 행위가 된다.
- ⑤ 전환이 처분청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05 공용환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환지계획은 항고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 ② 환지에정지 지정은 처분에 해당하므로 환지처분이 일단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한 후에도 환지에정지지정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③ 공람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가받은 환지계획 및 이러한 환지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환지에정지 지정처분은 위법하다.
- ④ 판례는 환지확정처분의 일부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소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는다.
- ⑤ 환지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환지계획에 없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환지처분은 당연무효이다.

06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물은 공소유권의 대상이므로 사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②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수익을 허가할 수 없다.
- ③ 인접주민의 공물에 대한 강화된(고양된) 이용권은 허가를 요하는 것이 아니다.
- ④ 공물의 특허사용권을 침해하는 사인(私人)이 있는 경우에 그 구제는 행정쟁송수단에 의한다.
- ⑤ 관습법상의 사용이 인정되는 공물은 공물의 자유사용에 제공된 것에 한정된다.

07 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부이어야 제기할 수 있다
- ② 특허청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특허법원과 대법원으로 연결되는 2심제를 취하고 있다.
- ③ 취소소송과 이와 관련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관련청구소송을 이송할 수 있다.
- ④ 권한이 위임된 경우는 위임청이 아닌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 ⑤ 소변경의 허가결정이 있으면 신소는 구소가 제기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며, 구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08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다음의 판례 중 옳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므로 징계를 요구할 의무는 없다.
- ② 임용권자는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할 필요 없이 징계시효기간 내에 징계의결요구를 하면 된다.
- ③ ‘휴직자와 정년이 가까운 자’를 우선 면직 대상자로 한다는 기준만을 정하여 면직처분을 한 경우,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고려하여야 할 면직기준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다른 기준을 정하여 한 면직처분이므로 위법하다.
- ④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에 보직을 해제하는 징계처분의 일종이다.
- ⑤ 지방계약직공무원의 보수는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삭감할 수 있다.

09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 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영업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을 한 후 당초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이 아닌 변경처분은 아니다.
-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자에 관한 결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임용지원자에 대한 교원 신규채용 중단조치는 임용지원자에 대한 신규임용을 사실상 거부하는 중과적인 조치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한다.
- ㉣ 노동조합협약의 변경보완 시정 명령은 노동행정에 관한 행정관청의 의사를 조합에 직접 표시한 것이고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① ㉠, ㉡
- ③ ㉢, ㉣
- ⑤ ㉤, ㉥

- ② ㉠, ㉢
- ④ ㉢, ㉥

10 한강둔치에 편의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甲에게 관할 행정청이 부지점용허가를 하면서 매달 일정한 점용료를 납부할 것을 부담으로 붙인 경우와 관련하여 옳은 설명은?

- ① 점용료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지점용허가의 효력은 소멸한다.
- ② 점용료납부의무만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 ③ 점용료납부의무의 부관을 붙이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 ④ 점용료를 미납하더라도 부관이 갖는 종속성 때문에 독립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다.
- ⑤ 점용허가와 점용료납부의무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상 무효에 해당한다.

11 대한토지주택공사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소유자와 교섭하였으나 소유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이 있기 전에는 그 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대한토지주택공사와 토지소유자에게 화해를 권고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대한토지주택공사와 토지소유자는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⑤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12 다음 중 무효인 행정행위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토지수용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였거나, 토지소유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인정을 한 것
- ㉡ 음주운전을 단속한 경찰관이 자기의 명의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행한 것
- ㉢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부고지서에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보다 단축하여 기재한 것
- ㉣ 도지사의 인사교류안 작성과 그에 따른 인사교류의 권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관할구역 내 시장(市長)이 인사교류에 관한 처분을 행한 것

- ① ㉠, ㉡
- ③ ㉢, ㉣
- ⑤ ㉠, ㉡, ㉢, ㉣

- ② ㉡, ㉣
- ④ ㉡, ㉢, ㉣

13 행정입법에 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다.
- ② 국무총리훈령 형식으로 제정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은 집행명령으로서 법률 보충적인 구실을 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진다.
- ③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은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진다.
- ④ 구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9조 [별표 6]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처분기준'의 법적 성격은 법규명령이다.
- 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5]의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에서 그 업무정지기간은 최고한도의 의미를 가진다.

14 다음 판례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매 담당 공무원이 이해관계인에게 기일통지를 잘못된 것이 원인이 되어 경락허가 결정이 취소된 사안에서, 그 사이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락인에 대하여 국가는 배상책임을 진다.
- ②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미치므로,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면 종전 처분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된다.
- ③ 취소소송에서 전소와 후소가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 ④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 및 허가기준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 ⑤ 행정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에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소의 원고뿐만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도 이에 기속된다 할 것이므로 면직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점이 판결에서 확정된 이상 원고가 다시 이를 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는 없다.

15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주대책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사회보장적 차원의 급부로서 공익 사업시행자의 법적 의무는 아니다.
- ② 토지의 이용에 대한 공용제한을 하는 경우 현행법상 토지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 ③ 희생의 공평분담의 원리가 개개인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주민 등 집단에 대한 일반적 지원으로 구현되는 경우도 있다.
- ④ 채권보상이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 ⑤ 행정상 손실보상청구를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도록 인정한 판례가 있다.

16 전염병 발생시 행정청의 권한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제1군전염병에 관한 강제처분권한에 대해서는 법률유보원칙이 배제된다.
- ② 전염병환자가 특정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될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이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 ③ 예방접종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전염병예방법상 국가보상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행위자 등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 ④ 가족전염병예방법상 죽거나 병든 가족의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므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다.
- ⑤ 가족전염병예방법상 가족의 소유자에게 행한 살처분명령은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므로 소유자의 이행을 기다리지 않고 행정청에 의해 즉시 실행된다.

17 다음 판례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규정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②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될 때에 그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법률 규정에 따르면, 관할 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전면허취소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
- ③ 각 국가유공자 단체의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각 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것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사항이나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인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
- ④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으로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부를 심판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 ⑤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례는 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 중 적합성원칙에 관한 것이다.

18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판례의 내용 중 옳은 것은?

- ①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는 이상 고속도로의 점유관리자는 그 하자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거나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비로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 ②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경우에는 그 기관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③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 자체가 없더라도 부당한 재판으로 인하여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국가배상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④ 세관 공무원들의 공무원증 및 재직증명서 발급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세관의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등을 위조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에 해당하는 직무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 ⑤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 군사교육을 마치고 경비교도로 전임되어 근무하는 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국가배상청구권에 제한을 받는다.

19 다음 판례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는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②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은 행정처분이다.
- ③ 표준공시지가의 결정은 처분성을 가지지 않는다.
- ④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은 행정처분이다.
- 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것에 불과하며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다.

20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장은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는다.
- ② 개인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 ③ 공적 견해표명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적 구속력 있는 형식으로 표명되었는 가 여부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는다.
- ④ 신뢰의 보호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신뢰는 보호될 수 없다.
- ⑤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자가 사실은폐 등 적극적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한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21 과징금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위반행위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지 않고도 과징금을 강제징수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② 위반행위로 인한 수익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과징금 제도가 인정되고 있다.
- ③ 과징금의 원래 취지는 위반행위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다.
- ④ 변형과징금의 1차적 목적은 영업정지처분을 받는 자에 대한 최소침해의 수단을 찾는 것이다.
- ⑤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벌금을 병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2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판례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사정변경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② 감독청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회권을 갖지 못한다.
- ③ 행정청이 철회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장기간 철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실권의 법리에 의하여 철회권 행사가 제한된다.
- ④ 침익적 처분에 대한 철회는 자유로우나 수익적 처분이나 제3자효 처분에 대한 철회는 제한받는다고 할 수 있다.
- ⑤ 영업허가의 철회를 취소한 경우에도 철회 이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영업에 해당한다.

- 23 행정사무의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행정권한의 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 ② 기관위임사무의 재위임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
 - ③ 내부위임을 받은 수임관청은 자기의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행정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다.
 - ⑤ 개별법상 재위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정부조직법 제6조와 ‘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근거하여 재위임이 허용된다.

- 24 관계법령은 민간연수원과 같은 교육시설을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이 소재한 관청으로부터 먼저 용도변경허가를 받은 후 숙박시설을 관할하는 관청으로부터 숙박업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민간연수원을 소유하고 있는 甲은 용도변경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숙박시설을 관할하는 관청으로부터 곧장 숙박업허가를 받아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여 현재 영업을 하고 있다.

- ① 甲이 숙박업허가의 위법성을 알지 못한 것이 과실이 없다면 이익형량상 숙박업허가에 대한 취소가 제한될 수 있다.
- ② 甲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숙박업허가에 대한 취소는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 ③ 甲에 대한 숙박업허가에 하자가 있어 처분청이 취소하는 경우 법적 근거는 필요하지 않다.
- ④ 유사한 연수원을 소유한 乙은 평등원칙을 근거로 자신에게도 용도변경허가 없이 소유시설에 대한 숙박업을 허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甲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숙박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甲은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 25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관하여 옳은 것은?

- ① 행정조사는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사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 ② 조사대상의 선정에 있어 자율준수노력 등을 고려함은 형평에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자발적인 협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에 있어 조사대상자가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조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 ④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 ⑤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공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01 ③

- ① 대법원은 도시관리계획결정이 고시되면 건물의 신축·개축·증축 등 국민의 권리행사가 일정한 제약을 받게 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판 1982.3.9, 80누105].
- ② 계획재량과 일반행정재량 간의 차이는 양적인 차이만 존재할 뿐 둘 다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는 구별부정설과 양자는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차이가 존재한다는 구별긍정설의 견해가 있다.
- ④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9조 제1항 “도시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 직접 결정한다.”
- 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제30조 제6항에 따른 고시 가 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02 ②

● 판례참조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을 구함에 있어서도 이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 바, 이 경우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되는 손해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과 관련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결 2000.10.10, 2000무17].

03 ④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

-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 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04 ②

쟁송제기이전시설과 쟁송종결시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판례는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 기간 내에 가능하다고 판시하여 쟁송제기(행정심판, 행정소송)이전시설을 취하고 있다.

05 ②

○ **관계법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는 환지처분을 기본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지구 내의 종전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당해 환지예정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수익을 할 수 없게 하는 처분에 불과하고 환지처분이 일단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은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므로,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는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대판 1999.10.8, 선고 99두6873].

06 ③

- ① 사소유권의 물건이라도 행정주체에 의해 공적 목적에 제공되면 공물이 된다.
- ②

국유재산법 제30조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 :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2. 보존용 재산 :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 ④ 공물의 특허사용권은 공권이라 해도 사인에 의하여 특허사용권이 침해되는 경우라면 사법상의 불법행위가 성립되므로 민사소송으로 한다.
- ⑤ 관습법상의 사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 특정지역의 사람들이 당해 공물을 평온·공연하게 장기간 사용하고 있으며, ㉡ 이러한 사용관계가 자유사용에 제공된 것이 아닌 특정범위의 사람에게 한정되고 있으며, ㉢ 사용관계의 내용이나 정도가 특별한 것이어야 한다.

07 ③

행정소송법 제10조

① 취소소송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1.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 청구소송
2.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

08 ③

① ○ **관계법조**

지방공무원의 징계와 관련된 규정을 종합해 보면, 징계권자이자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과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재량은 있지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대판 2007.7.12, 선고 2006도1390].

②

○ **관련참조**

임용권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소속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징계의결요구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대관 2007.7.12, 선고 2006도1390].

④

○ **관련참조**

구 국가공무원법(2002.1.19. 법률 제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므로 과거의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대관 2003.10.10, 선고 2003두5945].

⑤

● **관계참조**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징계및소청규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에 정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판 2008.6.12, 선고 2006두16328].

09 ④

㉔

● **관계참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본문,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규정들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각 목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피해 유형을 추상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민주화운동의 내용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그 규정들만으로는 바로 법상의 보상금 등의 지급 대상자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받아야만 비로소 보상금 등의 지급 대상자로 확정될 수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8.4.1, 2005두16185].

㉕

● **관계참조**

노동조합규약의 변경보완시정명령은 조합규약의 내용이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고 보아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같은 법 제16조 소정의 명령권을 발동하여 조합규약의 해당 조항을 지적된 법률조항에 위반되지 않도록 적절히 변경보완할 것을 명하는 노동행정에 관한 행정관청의 의사를 조합에게 직접 표시한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대판 1993.5.11, 91누10787].

10 ②

- ① 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③ 부지점용허가는 특허이므로(수익적 행정행위) 별도의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④ 부담은 독립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 ⑤ 점용료납부의무와 점용허가는 실질적 관련이 있으므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반은 아니다.

11 ③

토지소유자는 재결신청은 할 수 없고 촉구할 수는 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8조

- 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제2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12 ②

㉠

○ 관례참조

운전면허에 대한 정지처분권한은 경찰청장으로부터 경찰서장에게 권한위임된 것이므로 읍주운전자를 적발한 단속 경찰관으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명의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대행처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신의 명의로 이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단속 경찰관이 자신의 명의로 운전면허행정처분통지서를 작성·교부하여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은 비록 그 처분의 내용·사유·근거 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점에서 무효의 처분에 해당한다[대판 1997.5.16, 97누2313].

㉡

○ 관례참조

도지사의 인사교류안 작성과 그에 따른 인사교류의 권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여진 관할구역 내 시장의 인사교류에 관한 처분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제2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대판 2005.6.24, 2004두10968].

㉢

○ 관례참조

구 토지수용법(1990. 4. 7. 법률 제4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에서는 건설부장관이 사업인정을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기업자·토지소유자·관계인 및 관계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기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사업의 종류, 기업지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가령 건설부장관이 위와 같은 절차를 누락한 경우 이는 절차상의 위법으로서 수용재결 단계 전의 사업인정 단계에서 다룰 수 있는 취소사유에 해당하기는 하나, 더 나아가 그 사업인정 자체를 무효로 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러한 위법을 들어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대판 2000.10.13, 2000두5142].

㉔

○ **관계참조**

개발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지고 납부고지서의 기재는 그 정하여진 날짜를 그대로 기재하는 것에 불과하여 납부기한을 잘못 기재한 것만으로는 납부기한이 단축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지장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2.7.23, 2000두9946].

13 ③

○ **관계참조**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에서 입목본수도 등에 따른 관계 법령상의 사용제한 등을 개별요인이 아닌 기타요인에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위 토지보상평가지침은 단지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지침에 반하여 위와 같은 법령상의 제한사항을 기타요인이 아닌 개별요인의 비교시에 반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감정평가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7.7.12, 선고 2006두11507].

14 ②

○ **관계참조**

채결의 기속력은 채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고, 종전 처분이 채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처분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서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채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인 사실 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판 2005.12.9, 선고 2003두7705].

15 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에 이주대책을 규정하였으므로 법적 의무에 해당한다.

16 ④

① 제1군전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에 관하여는 전염병예방법 제29조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강제처분권한에 대해 법률유보원칙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②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적용되고, 전염병환자가 특정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될 의무는 비대체적·부작위의무이다.

③

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2

② 제1항에서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라 함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등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당해 예방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발생한 피해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제1종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당해 가축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당해 가축을 살처분하게 하여야 한다.

17 ⑤

비례의 원칙 중 상당성의 원칙에 관한 것이다.

18 ①

②

판례참조

어떠한 행정처분이 뒤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그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바, 그 이유는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빚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대판 2001.3.13, 선고 2000다20731].

③

판례참조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한 재판으로 인하여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배상 이외의 방법으로는 자신의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대판 2003.7.11, 선고 99다24218].

④

○ 판례참조

인사업부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등을 위조한 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는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외관상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집행관련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이다 [대판 2005.1.14, 선고 2004다26805].

⑤

○ 판례참조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고 병역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되어 구 교정시설경비교도 대설치법(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하여 경비교도로 임용된 자는, 군인의 신분을 상실하고 군인과는 다른 경비교도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군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1998.2.10, 선고 97다45914].

19 ③

표준공시지가의 결정은 판례가 처분성을 인정해왔다.

20 ⑤

○ 판례참조

귀책사유라 함은 행정청의 견해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입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8.1.17, 선고 2006두10931].

21 ④

변형된 과징금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인·허가사업 등에 대해 정지처분을 하면 사업자에게 주는 불이익에 비해 국민에게 주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사업을 계속하게 하되 이를 통해 얻는 이익을 박탈하는 변형된 과징금제도이다.

22 ⑤

○ **관계법조**

영업의 금지를 명한 영업허가취소처분 자체가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며,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장애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를 무허가영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판 1993.6.25, 93도277].

23 ②

○ **관계법조**

기관위임사무의 재위임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조례로는 재위임을 할 수 없고,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임하는 것만이 가능하다[대판 1995.7.11, 94누4615].

24 ④

용도변경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숙박업허가를 내준 것이 불법이지만 그렇다고 乙이 평등원칙을 근거로 동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는 없다. 평등의 원칙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조치는 허용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지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불법에 있어서의 평등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25 ④

①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

① 행정조사는 법령 등 또는 행정조사운영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행정조사기본법 제8조

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의 목적, 법령준수의 실적, 자율적인 준수를 위한 노력,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하여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행정조사의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행정조사기본법 제20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조사에 대하여 조사대상자가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⑤

행정조사기본법 제14조

-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